

등록번호	사회복지과-3572
등록일자	2015.1.27.
결재일자	2015.1.28.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주무관	자활주거팀장	사회복지과장	복지환경국장
임경희	백영규	안춘자	전결 01/28 유용렬
협 조			

2015년 노숙인상담반 운영계획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

2015년 노숙인상담반 운영계획

거리노숙인에 대한 순찰 및 상담을 통해 위기에 처한 거리노숙인을 보호하고 노숙인의 자활의지 증진 및 주민불편해소

I 관련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2015년 제1차 기간제근로자 합격자 명단 통보(총무과-1629(2015.01.15))

II 추진방향

- 거리노숙인과의 상담을 통해 노숙인시설 입소 유도 및 병원치료 의뢰
- 신규 노숙인의 조기발견과 신속한 대응으로 노숙장기화 방지
- 거리노숙인 안전사고 예방
- 거리노숙인의 자활의지 및 자립기반 조성
- 거리노숙인 감소로 주민불편 최소화

III 노숙인 및 노숙인시설 현황

㉮ 거리노숙인 현황

(2015.01.25.현재)

계	서울역	시청·을지로	기타(공원 등)
165	94	55	16

Ⅲ 노숙인시설 현황

구 분	시설명	위 치	직원수	노숙인수		비고
				정원	현원	
계			18	94	72	
자활시설	신당희망의집	중구 동호로11길 22	4	15	4	
	화엄동산	중구 동호로24길 27-17	3	15	15	
	소중한사람들(남성)	중구 중림로8길 12	5	44	37	
일시보호 시설	소중한사람들 여성쉼터	중구 만리재로37길 43	6	20	16	

Ⅲ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현황

센터명	소재지	활 동 지 역	비고
다시서기 종합지원센터	용산구 갈월동14-30	서울역부근, 서소문공원, 남산입구 지하도, 송례문공원 주변 등	777-0564
브릿지 종합지원센터	서대문구 합동 13	시청, 덕수궁, 서울시의회지하도, 을지로,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등	363-9199

IV 세부추진계획

Ⅲ 거리노숙인 주요내용

- 거리노숙인 보호체계 구축
 - 거리노숙인의 상황별 대처
 - 일반노숙인 : 노숙인쉼터 입소, 응급대피소 이용 유도
 - 응급, 신체질환 노숙인 : 119구급대 호출, 병원으로 이송
 - 알코올 의존 노숙인 : 비전트레이닝센터 입소, 응급대피소 이용 유도
 - 정신질환 노숙인 : 비전트레이닝센터, 은평마을 입소
 - 거리생활을 고집하는 노숙인에 대한 겨울철 응급구호활동 강화
 - 이동식 쉼터(간이침대), 침낭 등 서울시에서 지원받아 제공
- 거리노숙인 긴급복지지원 강화
 - 신규 거리노숙인(6개월 미만)에 대하여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여 위기상황 극복 및 자립기반 마련

-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응급상황 신속 대처
 - 경찰, 소방, 의료기관, 노숙인시설간 비상체계 구축
 - 위기대응콜 1600-9582(구호빨리) 활용하여 신속 대처

3 운영기간 : 2015.02.01. ~ 10.31.

※ 노숙인상담반은 기간종료 후 9개월 단위로 연속적으로 운영

3 운영방법

- 인 원 : 7명(총무과에서 채용한 기간제근로자)
- 근무장소 : 다시서기 종합지원센터
 - ※ 거리노숙인 대부분이 서울역 주변에 산재해 있고 브릿지 종합지원센터는 기간제근로자 배치를 희망하지 않음
- 운영방법
 - 종합지원센터 배치 후 근무요령 등 교육 후 근무 실시
 - 근무조건 변경 필요시에는 구청의 작업지시에 따름
- 근로내용
 - 근무시간 : 09시 ~ 18시
 - ※ 야간은 다시서기 종합지원센터에서 코스별 순찰 실시
 - 근로조건
 - 주5일 근무(토, 일요일, 법정 공휴일 제외)
 - 일당제 급여 지급(1일 45,600원, 주,월차수당 지급)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보험 가입

3 순찰지역

서울역(대합실, 광장, 지하도) → 서소문공원 → 연세빌딩 →
남산입구 지하도 → 송례문광장 → 회현역

※ 중구 관내 다른 지역은 구청 노숙인담당이 매일 순찰

㉓ 활동방법

- 주요 노숙인 발생지역의 순찰을 통해 노숙인 밀착 상담으로 종합 지원센터 및 노숙인복지시설 입소 유도
- 거리노숙인의 응급환자 발생시 병원치료 및 입원 유도
- 초기 노숙인을 조기 발견하여 귀향조치로 노숙 장기화 방지
- 긴급지원 대상자 발굴 및 사업안내
- 동절기 노숙인 동사예방을 위한 간이침대, 침낭 등 지원
- 민원발생시 적극행정으로 민원해결

㉔ 소요예산 : 116,180천원(시비 50%, 구비 50%)

- 인 건 비 : 113,780천원
- 일반운영비 : 2,400천원

㉕ 사업효과

- 거리노숙인의 노숙인복지시설 입소 및 긴급지원을 통한 자활의지 증진 및 자립기반 조성
- 안전사고예방 등 효율적인 노숙인관리 강화
- 거리노숙인 현황조사로 실태파악 용이
- 거리노숙인 감소로 민원발생 및 주민불편 최소화

V 홍보계획

- 홈페이지, 중구광장, 동주민센터 직능단체 등을 이용하여 홍보

VI 행정사항

-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서 체결 및 업무내용 사전설명 실시
- 2015.01.29.(목) 예정
- 전염병 등 신체 이상여부 확인을 위해 건강진단 실시

제5조(근로일)

근로일 : 매주 월요일~금요일 (다만, 토요일(유급휴무일), 일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근로일에서 제외한다)

제6조(계약의 해지)

- ①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 불가, 업무관련 자료 유출, 고의·중과실로 손해초래, 업무량 변화·예산감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② “근로자”가 무단으로 3회 이상 결근, 상습적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제7조(기타)

- ① “근로자”는 매일 일일근무상황부에 근로시간을 기재하고 “사용자”가 지정한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② “근로자”는 업무를 보조함에 있어,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자”나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재산상의 손실,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민·형사상의 배상·보상책임을 진다
- ③ “사용자”의 업무의 변경 또는 업무사정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수 있다.
- ④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자”는 “사용자”와 별도의 재계약 행위가 없을 시 자동으로 계약이 완전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⑤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⑥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통상 관례에 따른다.

제8조(계약서의 보관)

“사용자”와 “근로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이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15년 월 일

(사용자) 서울특별시중구청장 : (인)
(근로자)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기간제근로자 등 계약구비서류

- 이력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해당자) 각1부, 채용신체검사서(해당자) 1부,

서 약 서

본인은 중구 노숙인상담반으로 채용됨에 따라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무 중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은 계약기간중 물론, 계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2. 직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감독공무원의 직무상 명령에 따른다.
3. 출·퇴근시간 및 서울시의 제반 근무수칙을 엄수한다.
4. 우리구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거나 업무관련 자료를 유출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5. 업무 수행중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즉시 감독(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하고 업무지시를 받는다.

이상과 같이 성실한 자세로 근무에 임할 것이며 본인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 시 그 책임을 본인이 지고 계약해지 등의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5. . .

서약자 : (서명)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